

- ① 문장 및 문단 구분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할 것. 또한 오타, 탈자 그리고 띄어쓰기 검토할 것. 이것은 글의 기본 중에 기본.
- ② 에세이 주제는 시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이나 신체의 자유권 등과 같은 고전적인 권리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논의임.
- ③ 하지만 필자가 본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증은 이와 같이 중요한 논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 문제에 대한 단순한 생각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임.
- ④ 따라서 동선 공개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제시하거나 할 수 있는 논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성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들을 비판적으로 논평함으로써 동선 공개를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을 무력화하거나 반론하는 구성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 ⑤ 나아가 동선 공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적 이익에 관한 논의를 추가함으로써 동선 공개의 정당성을 더 확보하는 논증으로 나아가야 함. 만일 이와 같이 논증할 경우 본론은 두 개 또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⑥ 외국의 사례 또한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 나라에서는 어떤 논리를 들어 그와 같은 제한을 정당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어야 함.
- ⑦ 우리나라의 정책이 유럽이나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의 정책에 비해 강한 지 또는 약한 지 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 ⑧ 교재 5장을 반드시 검토하고, 에세이의 기본 형식에 부합하도록 글을 구성할 것. 예컨대, 인용한 부분에 대한 각주가 전혀 없으므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고, 글의 마지막에 인용한 문헌들을 참고문헌으로 정리해야 함.

## 2. 본론

### 2.1

### 2.2

### 2.3

...

## 코로나 19사태 정보공개는 방역인가 개인인권침해인가?

이름 : 남해주

학번 : 202111671

학과 : 뷰티디자인경영학과

과목명 : 대학글쓰기

제출일 : 2021. 12 .11

## 목차

## 서론

1. 계속되는 공익과 개인인권의 대립
2. 대립 완화를 통해 바라는 것

## 본론

1. 코로나 19사태 동선공개 방역정책이란?
2. 동선공개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 2-1. 동선공개는 방역정책으로 문제되지않는다
  - 2-2. 동선공개는 개인정보침해로 이어진다
3. 가능한 반론
4. 타국사례

## 결론

7. 앞으로의 우리가 바라봐야할 방향성 제시

## 서론

1. 계속되는 공익과 개인인권의 대립

[새로운 문단이 시작할 경우, 두 칸 들여쓰기]기술이 발전하고 빠른시간안에 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술의 양면성이 개인정보 관련해 문제가 되고는 한다

예를 들어 CCTV가 이제는 외출시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생활반경에 흔하게 들어서있다 이렇게 설치된 CCTV는 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 범인을 확인하는 등 여러 범죄를 예방하고 또는 범죄수사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적법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영상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처럼 공익을 위한 적법한 것임에도 항상 대립은 생기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도 공익을 위한 방역정책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과 각 자치 단체는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를 하는데 확진자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 효과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 대책으로 인해 코로나 19 확진자 정보 공개 범위의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정보를 알아야 지역 주민들이 선제 대응할수있다는 주장과 이와 반대로 과도한 동선공개는 오히려 확진자에게 바이러스 감염증세보다 더 끔찍한 사생활 침해 피해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코로나 19사태가 온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이 주제를 다뤄 보고자 한다

## 2. 대립완화를 통해 바라는 것

현안은 사실상 영역만 좀더 세밀할뿐 이제까지 계속 딜레마적인 문제로 화두되고있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공공이익의 대립 문제이다 따라서 당장 금방 이게 정답이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이익은 저울질을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한쪽이 절대선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여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여러 근거와 자료를 마련해 조금씩 조금씩 조율을 해나가고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안 등이 더욱더 섬세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두가지 대립이 완화가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 3. 코로나 19 동선공개 방역 정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 2(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 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이는 역학조사를 거친후 동선 공개를 하는 방식인데 역학조사 과정은 이렇하다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 동거가족, 증상 및 발현일, 방문장소를 확인하여 1차적으로 기초 역학 조사서를 작성한다 그후에 조사서 작성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역학조사반이 확진자의 이동동선 및 방문 장소에 현장 출동하여 접근 도로 , 복도 등 실내외의 CCTV분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업소의 매출전표확인, 회원 명부 또는 출입자 명부확인 GPS등 확진자의 감염경위와 동선등을 파악한다

한국에서는 빠른 역학조사를 통한 확진자의 동선파악으로 초기 대응을 훌륭하게 해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4. 동선공개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과 내가 바라보는 시선

코로나 방역 정책중 하나인 동선공개에 대해서 누군가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를 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알권리와 생명권이 우선이다라고 말한다

하면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공개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며 확진자 동선공개로인해 오히려 방역에 구멍이 생겨 결국에는 그 효과는 얻는

피해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코로나 동선공개에 우호적인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과 장소를 알게 됨으로 질병예방의 효과가있으며 2차 감염예방또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코로나 동선공개자체가 곧 개인정보 침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간 확진자의 동선공개는 주로 시간대별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공개되었으니 당연히 확진자의 성명이나 연락처, 주소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확진자의 동료나 지인들이 비공개된 확진자를 심적으로 추론해낼수있다는 전제를 깔로 확진자 동선공개가 개인정보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한다

확진자의 동선공개에는 개인을 특정할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매우 높은 전염성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하는 국가적 위난상황이다 대한민국 뿐 아닌 전 세계가 이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빠르게 방역을 하는 것이 최일선의 일일 것이다

**확진자 이동경로등 정보의 공개가 무엇도 명시되어있지않고 그냥 시행 된다면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분명히 감염병 예방법 제 34조 2에 규정이 되어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있었을때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나 이동수단 등 접촉자 현황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 결국 이것은 확진자의 동선등을 공개함으로써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들을 관리하기 위함이지 확진자에게 낙인효과로서 피해를 주고자 함이 아니다

이러한 사안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반한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58조 1항 3호 공공의 안전 공중 위생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수있다는 규정으로 답할수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도 물론 중요하나 현재와 같이 다수의 공중 위생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개인정보를 위해 존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조차 명시를 하고 있다 또한 가장 상위법이 대한민국 헌법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조항이있다 국가 안위 등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수있다는 조항이다 공공의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케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개인적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수있으며 이는 헌법 조항의 존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반대입장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동선공개를 했을 때 받는 피해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부정하지않는다 당연히 나도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진자로 찍혀 여러 피해를 받는 사례들을 접해본바 있다

그러나 비공개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해킹이나 심리적추측 등 기타 방법으로 추적, 공개하는 행위는 동선공개와는 별도의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피해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어 해결할 사안이며 비단 확진자의 이동 동선 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 처벌 방식이나 보호 법익을 달리할 이유는 없다

동선공개로 자신의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 공개 되었고 이로 인해 비난이나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해 형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동선공개로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그것이 동선공개로인한 문제가 아닌 동선공개를 악용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또다른 범죄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이 만들어짐으로 여러 보험사기, 뺑소니, 보복운전 등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들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두고 그 누구도 자동차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듯 동선공개와 개인정보침해 문제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동선공개는 분명한 법적 근거와 확실히 명시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상황은 우리 사회 공공의 집단이 유지되고 안전을 확보하는 이익과 비교형량의 측면에서 바라 보았을 때 확진자를 특정하거나 직시 하는 정보가 아닌 현재의 개인정보의 공개는 정당행위적 관점에서 볼수있을것이며 이러한 관점이 유지되어야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팬데믹 현상을 빠르게 이겨내고 존치될수있을 것이다

## 5. 반론과 재반론

앞서 내가 바라본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론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크게 3가지로 나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가능한 부분들을 생각해보았고 또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해보았다

첫 번째 정보공개가 방역에 효과적이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 됨으로 이것이 방역에 필요한 일정 부분을 넘어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 관련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 반론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사례가 한가지 있었다

어떤 확진자의 동선이 같은날에 여러 모텔을 다닌 것으로 공개가 되었던 사례이다 물론 이것이 은밀한 사생활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은밀한 사생활일 것이다 그러나 동선공개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모텔을 다니고 성생활을 하는구나 이것을 세상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지’ 이런 의도로 한 것은 명백히 아니다 누군가의 동선은 집-학교-도서관-알바-독서실 이럴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클럽-술집-친구집-술집-해장국집 이런식일수도있는 것 아닌가? 은밀한 사생활이 공개되었다고해서 그것이 동선공개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잘못된 소문과 확진자라는 낙인 효과로 인한 신상털기, 악성댓글 등 또다른 2차 피해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서 피해 입은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정보공개로 인한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와 영업 방해 사례등을 국가의 안위만을 바라보고 넘어갈수있는가?

사실 조금 이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코로나로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상황을 겪고있음을 알고있기에 그러나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와 영업 방해 사례등을 국가의 안위만을 바라보고 넘어갈수있는가? 라는것에는 반대로 묻고싶다 인권침해 사례와 영업 방해사례가 동선공개로인한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피해 사례만 바라보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물론 개인이 있기에 사회가있고 국가가있는 것은 맞지만 국가가 없다면 개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국가가 존속되어야지 개인의 권리또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침해 사례와 영업방해사례가 동선공개로 인한 것이 맞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을뿐더러 그 전제가맞다 하더라도 그 피해 사례만 바라보고 국가안위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피해사례를 보다 더 확실하게 보상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진자 신상이 추론 가능하다 이로 인해 확진자의 신상 정보들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확진자가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의심 증상자들이 검사 자체를 두려워 하고 숨어들게 되면 방역을 위한 정보공개가 오히려 반대로 방역에 구멍이 생기게 하는 오점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부분은 사실 반론 준비를 하면서 오점으로 작용되는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다가 나에게 새로운 시사점이 되었던것같다 그러나 결국에 내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같은맥락이다 동선공개 의 문제점이 아니라 동선공개로인해 발생하는 또다른 범죄로인한 문제점이다 예를들어서 몸에 면역 항체가 부족해서 아무일 없이 몸에 멍이 생긴다고 치자 허구한날 맨날 멍 없애겠다고 계란으로 비비고 뭐 약을 바른다고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결국엔 근본적 원인인 면역 항체를 해결해야 멍도 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해 받은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어찌고저찌고 얘기해봤자 근본적인 문제인 시행되는 목적과는 다르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차피 어느 모양으로든 피해자는 생겨날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위한 확실한 법안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6. 외국 사례

일본 후생 노동성은 검사 건수는 발표하지 않은 채 지난 11만6,161건의 PCR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다른 국가와 달리 검사 건수 발표를 제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날로그 통계 방식을 라이브 통계를 집계할 수 없거나 턱없이 적은 검사 건수로 인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 추락을 막기 위해 늦게 발표하는 것 등으로 추정된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위상과 아베 정부의 정치적 위신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국가적인 위급상황에서조차 국가의 안위와 위상을위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의 동선공개를 비판하는 이탈리아 프랑스등 유럽국가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주거지에서 이동할수없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결국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들이 동선공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있는상황인데 정보공개와 인동의 자유제한 이두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 7.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성

나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고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있는가를 돌아봐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로인해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대면 수업 비대면 회의 비대면 근로 등 많은 것들이 언택트로 변화 하고있으며 이로인해 새로운 사업들도 생겨나기도하고 이전것들이 사라져 가기도 한다 그만큼 코로나는 누구에게 국한되는것이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동의를 할필요는 없기에 비판하고 지적하며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생각한다 또한 정책이 시행될 때 그것을 악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하루빨리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이겨나갈수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준비해야할것들과 이행해야할것들을 하며 자리를 지켜야할것이라고 생각한다.